



제422회 국회(임시회)
제1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

이스포츠(전자스포츠)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검 토 보 고

〈 이스포츠진흥자문위원회 폐지 〉

■ 정부 제출(의안번호 제2206614)

2025. 2.

문 화 체 육 관 광 위 원 회

수석전문위원 김건오

목 차

I . 제안경위	1
II .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	1
III . 검토의견	1
1. 이스포츠진흥자문위원회 폐지(안 제9조)	1

I. 제안경위

가. 제 출 자: 정 부

나. 제 출 일: 2024. 12. 17.

다. 회 부 일: 2024. 12. 18.

II.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문화체육관광부에 두는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, 운영 실적이 저조한 이스포츠진흥자문위원회를 폐지하려는 것임.

III. 검토의견

1. 이스포츠진흥자문위원회 폐지(안 제9조)

가. 개정안 요지

- 이스포츠진흥자문위원회를 폐지하기 위하여 제9조를 삭제함.

나. 개정안 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<u>제9조(이스포츠진흥자문위원회)</u> <u>① 이스포츠 진흥에 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</u>	<u><삭 제></u>

<u>관 소속으로 이스포츠진흥자문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둘 수 있다.</u> <u>②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</u>	
---	--

다. 검토사항

- 현행법 제9조¹⁾에 따른 이스포츠진흥자문위원회는 기본계획 등의 수립·시행 등 이스포츠 진흥에 관한 자문에 응하기 위한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 위원회로, 이스포츠·문화산업·교육·청소년·체육 등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및 이스포츠 선수 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위촉하는 10명 이상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됨.²⁾

- 1) 「이스포츠(전자스포츠) 진흥에 관한 법률」 제9조(이스포츠진흥자문위원회) ① 이스포츠 진흥에 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으로 이스포츠진흥자문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둘 수 있다.
②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- 2) 「이스포츠(전자스포츠)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5조(이스포츠진흥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)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이스포츠진흥자문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(互選)한다.
③ 위원회의 위원은 이스포츠, 문화산업, 교육, 청소년, 체육 등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및 이스포츠 선수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위촉한다.
④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.
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자문에 응한다.
1.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·시행
2.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이스포츠에 관한 실태조사
3. 이스포츠 대회의 육성 및 지원
4.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이스포츠 종목선정 기관의 지정 취소
5. 그 밖에 이스포츠 진흥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
⑥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전문적인 사항에 대한 자문이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에 분과위원회

- 현행법상 이스포츠진흥자문위원회는 자문기관인 위원회의 성격을 가지며, 동위원회의 의무적인 심의·의결 사항이 특별히 규정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법 시행(2012. 8. 18. 시행) 이후 지금까지 위원회 자체가 구성되지 않은 상태로 유지되고 있는 바, 이에 개정안은 정부의 위원회 정비 추진계획에 따라 ① 장기간 미구성 위원회 ② 단순 자문 성격 위원회에 해당하는 이스포츠진흥자문위원회를 폐지하려는 것으로, 정부 소속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 도모라는 측면에서 그 입법취지에 공감할 수 있음.
- 다만, 정부가 동일한 내용으로 2020. 6. 29. 제출한 「이스포츠(전자스포츠)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」 및 2022. 9. 30. 제출한 「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등 15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」 등에 대한 소위원회 심사에서는 위원들로부터 이스포츠진흥자문위원회의 폐지가 이스포츠 정책에 대한 정부의 관심 축소로 비추어질 우려 및 이스포츠의 인기가 증가하고 있는 시점에 위원회를 통한 체계적인 진흥 계획의 수립 필요성 등의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의결에 이르지 못하고 동 법안들은 임기만료로 폐기된 바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어 보임.³⁾

를 둘 수 있다.

3) 제382회 국회(정기회) 제1차 문화예술법안심사소위원회(2020.9.22.) 및 제404회 국회(임시회) 제1차 문화예술법안심사소위원회(2023.3.21.) 참조

- 또한, 현행법에 따르더라도 이스포츠진흥자문위원회의 설치 여부는 ‘재량사항’으로 규정되어 있어 법률에서 그 근거를 삭제하지 않더라도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위원회를 미구성하거나 위원회의 구성·운영을 최소화함으로써 운영상 효율을 도모할 수 있다는 점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어 보임.

○ 참고로, 문화체육관광부는 이스포츠진흥자문위원회를 폐지하는 경우 향후 필요시 「콘텐츠산업 진흥법」 제7조4)에 따른 국무총리 소속 콘텐츠산업진흥위원회 산하에 이스포츠분과위원회를 구성하여 전문가 및 업계 등의 의견수렴이 가능하다는 입장임.

- 아울러, 한국이스포츠협회도 현재 협회의 ‘이스포츠산업지원센터’ 내에 설치된 자문위원회에서 관련 기능을 수행 중어서 그 역할이 중복되므로, 향후 필요시 콘텐츠산업진흥위원회 산하 분과위원회로 운영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임.

-
- 4) 「콘텐츠산업 진흥법」 제7조(콘텐츠산업진흥위원회) ① 정부는 콘텐츠산업의 진흥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콘텐츠산업진흥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
1.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·추진에 관한 사항
 2. 콘텐츠산업 진흥 정책의 총괄·조정
 3. 콘텐츠산업 진흥 정책의 개발과 자문
 4. 콘텐츠산업의 지역별 특성화에 관한 사항
 5. 콘텐츠산업에 대한 중복규제 조정에 관한 사항
 6. 그 밖에 위원장이 콘텐츠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-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- ③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고,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.
1. 기획재정부장관·교육부장관·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·국방부장관·행정안전부장관·문화체육관광부장관·산업통상자원부장관·보건복지부장관·고용노동부장관·국토교통부장관·중소벤처기업부장관·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·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
 2. 콘텐츠산업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 사람
- ④ 제3항제2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.
- ⑤ 위원회에 간사위원 1명을 두되, 간사위원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된다.
-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문 의 처
02)6788-5376